



# 아산탕정2-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모집공고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한들불빛1로 8[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380]

■ 공급대상 : 2-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708호 중 1세대 (전용면적 59㎡ 1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 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 여부(아산탕정 2-A2블록 부적격당첨자는 청약 불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1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해약으로 발생한 공가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미 준공이 완료된 단지이므로 공간유형(기본형/공간확장형) 및 선택품목(가구, 주방가전,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아산탕정2-A6BL과 종복청약이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일세대 내에서 2인이상이 각각 아산탕정2-A2BL과 아산탕정2-A6BL에 종복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1세대로 간주)

## 알 려 드 립 니 다

- 금회 공급하는 아산탕정지구 2-A2블록 1,062세대 중 708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나머지 354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6.20.(화)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12.06.), 추가입주자모집공고(2020.04.28., 2020.09.04., 2021.05.03., 2022.07.07.)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12.06.)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http://apply.lh.or.kr)),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의 운영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해당동호 세대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일정 별도 통보)
- 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단지여건을 파악하신 후 신청(계약)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아파트 명칭은 '한들불빛도시 하늘채'입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20.) 기준 아산탕정 2-A2블록 기계약자(분양권을 전매받은 후 양도한 자 포함) 그 세대원 및 아산탕정 2-A2블록 부적격당첨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아산탕정2-A6BL과 종복청약이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일세대 내에서 2인이상이 각각 아산탕정2-A2BL과 아산탕정2-A6BL에 종복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1세대로 간주)
- 본 주택은 이미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서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공간유형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기 적용된 선택사항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해당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전매제한은 없으며, 전매를 희망할 경우 입주지정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내에 전매해야 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종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아산탕정2-A2블록 부적격당첨자는 청약 불가) 여부, 특별공급 기 당첨 여부 등은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 자격	기본요건	주택, 종복청약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LH청약센터([apply.lh.or.kr](http://apply.lh.or.kr)) 공지사항 및 개별안내)

공 고	접 수 (현장접수 불가)	당첨자(예비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당첨자 계약체결(택 1)	
				전 자	현 장
'23.06.20.(화)	'23.07.03.(월) 10:00 ~ 16:00	'23.07.04.(화) 14:00	'23.07.11.(화) 10:00 ~ 17:00		'23.07.24.(월) 10:00 ~ 17:00
LH 청약센터( <a href="http://apply.lh.or.kr">apply.lh.or.kr</a> ) 및 모바일앱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부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6층) *접심시간 12:00~13:00 제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a href="https://irts.molit.go.kr">https://irts.molit.go.kr</a> ) *접심시간 12:00~13:00 제외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3.07.24.(월) 10:00 ~ 17:00) 내 계약금 입금 후 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협정계약을 체결하실 분은 계약체결 당일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체결(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인 '23.07.24.(월)부터 '23.09.22.(금)까지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취소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관련문의 : HUG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본 지구는 의무가입 해당사항이 없으며, 모기지 관련 일반 사항은 최초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1. 공급규모

■ 아산탕정지구 2-A2블록 1,062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6~29층 10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세대

####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계)	금회 모집		입주 지정 기간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당첨자	예비입주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2-A2	059.7900D	59D	확장	59.7900	24.7770	5.3084	30.1825	120.0579	47.8707	1	5	'23.09.22.(금) 까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팜플릿 등으로 동·호별지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기타 단지여건,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팜플릿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9.1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원]

주택형	공급대상 동호	주택가격	계약금	잔금
			(주택분양가격의 10%)	
			계약 시	입주 시
059.7900D	203동 2501호	251,023,000	25,102,000	225,921,000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에 융자금(주택도시기금) 55,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이미 입주지정기간에 경과한 주택으로 현재 시세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 금액으로 공급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회 모집 공고는 해약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マイ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공간선택 안내 ※ 선택 불가

※ 금회 모집 공고는 해약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공간유형의 변경이 불가하며 공간확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형	선택사항(선택불가)
	공간확장형
059.7900D	침실2/불박이장

## ■ 추가선택품목(1) 안내 : 불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쿠탑 등 ※ 선택 불가

※ 금회 모집공고는 해약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공간유형(기본형/공간확장형) 및 선택품목(가구, 주방가전,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기 적용된 선택사항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며 기 적용된 추가선택품목 적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품목별 세부내용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 및 펌플릿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주택형	동호	공간유형	추가선택품목 적용내용		선택 시 납부		
			유형	선택품목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 시)
059.7900D	203동 2501호	공간확장형	가구	④ 주방 키큰수납장	874	87	787
			주방가전	⑦-2 하이브리드 쿠탑[가스1구+인덕션2구]	678	67	611
			시스템 에어컨	⑥-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843	584	5,259
			바닥재	⑤ 기능성 런카펫	기본		
합계					7,395	738	6,657

## ■ 추가선택품목(2) 안내 : 발코니 확장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실별 구분 가격							납부방식	
주택형	내역	계	침실1	침실2	침실3	ドレス룸	거실	주방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 시)
059.7900D	기본공사비(A)	96,011	18,128	7,527	7,983	6,654	29,060	17,176		
	확장공사비(B)	98,110	19,017	7,844	8,311	8,197	32,427	22,314		
	계약자부담액(B-A)	11,582	889	317	328	1,543	3,367	5,138	1,000	10,582

## 4.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총 주택가격 완납 후 열쇠불출이 가능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선납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잔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일(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추후 별도 안내 예정)를 하여야 합니다.

II

## 신청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이후(2023.07.04.)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세대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양,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민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증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 혼인 사실 증명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 및 부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물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을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주택(부양권 등 포함)의 평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무주택여부 산정기준

- 무주택여부 산정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여부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짜

■ **주택(부양과 들풀한)을 수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20.) 현재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도 6세 이하(만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혼부부 자격에 해당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20.) 현재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청약 시 입력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별표6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20.) 현재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3.07.03.(월) 10:00 ~ 16:00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 2. 신청 시 유의사항

- 펌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취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서 작성 항목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 서류확인 및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취소]를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접수 마감과는 2023.07.03.(월) 오후 5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 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신청방법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http://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신혼희망타운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신혼희망타운"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23.07.03.(월) 10:00 ~ 16:00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당첨자(예비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당첨자 계약체결(택 1)	
		전자	현장
'23.07.04.(화) 14:00	'23.07.11.(화) 10:00 ~ 17:00	'23.07.24.(월) 10:00 ~ 17:00	
LH 청약센터( <a href="http://apply.lh.or.kr">apply.lh.or.kr</a> ) 및 모바일앱 ※ 현장접수 불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부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6층) *접심시간 12:00~13:00 제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a href="https://irts.molit.go.kr">https://irts.molit.go.kr</a>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부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6층) *접심시간 12:00~13:00 제외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LH청약센터 공지사항 게시 및 문자 안내)

\* 서류제출 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6층 판매부 아산탕정2-A2BL 서류접수 담당자 앞('23.07.11.(화)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제출 인정)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 <a href="http://apply.lh.or.kr">apply.lh.or.kr</a> )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 ([apply.lh.or.kr](http://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서 작성 사항만으로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후 서류확인 및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3.07.11. 17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20.)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주민등록등본	필수	본인	(안내)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안내) 공시에 첨부된 해당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필수	본인	(안내)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③ 주민등록초본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선택	본인	(안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④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본인	(안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선택	본인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⑤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선택	본인 및 세대원	• 혼인기간이 7년을 경과하여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를 포함)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⑥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 임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⑦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⑧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⑨ 한부모가족증명서	선택	본인	
⑩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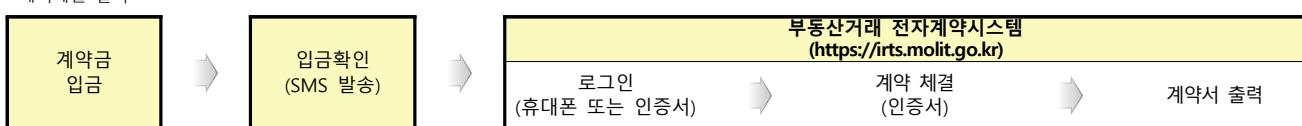
####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20.)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 현장수납 불가하며, <b>분양가격 계약금 + 추가선택옵션 계약금(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1,000천원 포함)</b> 확인 후 <b>합산금액</b> 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⑤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계약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인증서
<b>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b> 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7: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7: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10:00~17: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체결 필요)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펌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취소) 등을 받게 됩니다.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옵션선택품목 계약금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부로 서면 통보(주민등록등본 등 제출)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2. 별 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지구 및 단지 예건 등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9.12.06.)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2-A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314-82-1349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120-81-50012)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 6.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 서류제출·계약체결 장소 및 분양문의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6층 판매부
- LH 콜센터 : 1600-1004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LH 홈페이지 : LH청약센터([apply.lh.or.kr](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LH청약센터)



대전충남지역본부